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64
----------	-------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의자 : 정운천 · 김성찬 · 이양수
경대수 · 황주홍 · 윤준호
손금주 · 오영훈 · 손혜원
김태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제3호, 제9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제1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초공작물”을 “기초인공구조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u>공작물을</u>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u>인공구조물</u> ----- .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u>공작물</u> 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 <u>인공구조물</u>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 · ② (생 략)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③ ----- .

형을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③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